

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4.

발 의 자 : 이해식 · 양부남 · 김영진  
김교홍 · 홍기원 · 한민수  
박정현 · 윤준병 · 김원이  
위성곤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산으로 그 규모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공유재산 정보체계는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,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의 시간적,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방대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

한편, 최근 AI(인공지능) 등 첨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이 공유재산 정보체계에 적용될 경우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.

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I(인공지능), GIS(지리정보시스템) 및 위치정보 기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‘공유재산 정보시스템’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92

조약3 신설).

#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2조의3(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u>제92조의3(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